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년 1월 10일 조례 제1124호  
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79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, 공익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7. 10>

1. “공무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  - 나. 시의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  - 다.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
  - 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의 임직원
  - 마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의 임직원
2. “신고자”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.
3. “부조리신고 포상금”(이하 “신고 포상금”이라 한다)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.
4. “부조리 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
  - 나.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  - 다.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행위

**제3조(신고기한)**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까지로 한다. 다만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.

〈개정 2020. 7. 10〉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. 〈신설 2020. 7. 10〉

**제4조(신고의 의무 및 방법)**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, 이메일, 우편,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신고의 처리)** ①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신고의 경위·취지 및 이유
2.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
3.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

**제6조(신고자 비밀보장)** ① 신고의 접수,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,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7조(신분보장)**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·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8조(신변보호)**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.

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,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9조(보복행위 금지)**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,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조자의 보호)**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
**제11조(허위신고)**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(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)** 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-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「오산시포상조례」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, 시기,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
  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3조(포상금 지급)**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20. 7. 10>

- ②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>

**제14조(포상금 지급제외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
2.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
3.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,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
4.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5.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
6.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
7.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
8.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또는 행·재정상의 벌을 면탈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
9.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15조(포상금 환수)**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0. 7. 10 조례 제17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[별표]

**부조리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**(제13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
조례 제2조제4호가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</li><li>•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</li></ul>
조례 제2조제4호나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</li></ul>
조례 제2조제4호다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</li><li>•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</li></ul>

※ 다만,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